
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
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·과정,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·알선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함(안 제11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이 은 정)